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정원 외 2%)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충실대학교

송실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① 교육이념(건학이념)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교육목적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쳐 **인류의 번영과 국가 ·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적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수정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원서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건학이념에 따라 모든 학생은 소정의 기독교 과목과 채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Contents

1. 전형일정	3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
3. 지원자격	5
4. 지원자격 심사기준	7
5. 전형방법	11
6. 최종 선발기준	11
7. 지원방법 및 절차	12
8. 전형료	13
9. 지원자 및 서류제출 유의사항	13
10.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명단	15
11. 제출서류	16
▶ <별표1> 지원자 종합기록표	20
▶ <별표2> 외국학교 조사표	21
▶ <별표3>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	22
▶ <별표4>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	23
▶ <별표5>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24
▶ 부서 전화번호 안내	25
▶ 교내 건물 배치도	26
▶ 교통편(지하철) 안내	27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사항

■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재외국민 포함)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본교 내에서도 모든 전형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고사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지원하기**
바람(동일전형에서 모집단위 복수지원 불가, 타 전형 간 중복 합격 시 반드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함)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함

■ 복수지원 금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간 포함) 간 복수지원을 금지함(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기간군의 제한 없음)
- 수시 모집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함
[수시 최초 및 총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불가]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예술종합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음**(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수험생은 지원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타 대학에 충원합격자는 충원 기간 중 '반드시' 환불 신청하여야 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입학(합격)을 취소함. 또한,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본교 지원 관련 사항

-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지원자격 관련 서류심사 결과 포함)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대학 모집요강 공통 기재사항>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시간순서상 6회 이후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됨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합격)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 누락이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1.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7.20.(월) 10:00 ~ 7.23.(목) 18:00	• admission.ssu.ac.kr • 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필답고사장 안내	2020.8.4.(화) 10:00	• admission.ssu.ac.kr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 수험생 유의사항 필독
필답고사	2020.8.6.(목) 10:00	• 해당 시험장	- 신분증, 수험표 지참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8.10.(월) 11:00 (예정)	• admission.ssu.ac.kr	- 개별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안내사항 필독
1단계 합격자 서류제출	2020.8.12.(수) ~ 8.14.(금) 10:00~17:00	• 지정 장소에 방문제출 (추후 공지)	- 제출서류 구비 (p.16~17 참조)
최초 합격자 발표	2020.9.25.(금) 10:30 (예정)	• admission.ssu.ac.kr	- 개별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안내사항 필독
등록 예치금 납부	2020.12.28.(월) ~ 12.30.(수)	• 전국 지정은행 ※자세한 등록납부 기간 및 충원합격 발표 시간은 합격자 안내사항 참조	- 등록(예치)금 납입고지서를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admission.ssu.ac.kr)에서 직접출력 하여 지정된 은행에 제출하고 등록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등록 [필히 등록확인 할 것] - 개별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안내사항 필독
충원 합격자 발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12월 중)		
잔여등록금 납부	2021.2.8.(월) ~ 2.10.(수)		

※ 위의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admission.ssu.ac.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바람

※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에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포함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 열	대학명	모집단위		개설전공	모집구분 및 모집인원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인문	인문대학	기독교학과			2	모집인원 제한없음
		국어국문학과			3	
		영어영문학과			4	
		중어중문학과			2	
		철학과			2	
		스포츠학부		생활체육전공 스포츠사이언스전공	3	
	법과대학	법학과			2	
		국제법무학과			2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실천전공 사회복지정책·행정전공	3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행정정보관리전공	3	
		정치외교학과			2	
		정보사회학과			2	
		언론홍보학과			2	
자연	자연과학 대학	화학과			2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1	
		의생명시스템학부		생명정보학전공 생명공학전공	2	
	공과대학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2	
		건축학부 건축학·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2	
	IT대학	컴퓨터학부		시스템소프트웨어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	2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2	
			IT융합전공		2	
		글로벌미디어학부		미디어공학전공 컨텐츠공학전공	4	
		소프트웨어학부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전공	2	
	계					53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와 소프트웨어학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고 있으며, 해당 학과(부) 입학자는 의무적으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5년 과정임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하기를 받은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원에 관계없이 본교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집함

3. 지원자격

공통학력 : 고등학교 졸업(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24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의 의미: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연속적으로 학업을 이수한 경우를 의미하고, 국내와 외국 간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최소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외국 검정고시(예: 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교시 등) 및 홈스쿨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또는 외국 교육부로부터 학력취득이 비인가 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지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함

※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가 1개월이 낮은 국가(일본, 필리핀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외국 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해당국의 2021학년도 3월 졸업예정자)

지원자격	자격요건	학력요건
외국영주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 - 자격인정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영주권 취득 전·후 자격 인정 기준 기간 내에 국내 주민등록은 이민 말소가 되어야 함	[외국 이수 학력 요건]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기간을 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 재학기간 관련 설명 : 재학기간 '1년' 이라 함은 해당국이 학기제인 경우 2개 학기, 3Term제 인 경우 3개 Term, Quarter제 인 경우 4개 Quarter 전부를 의미함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재외국민 자녀 - 공무원 - 상사직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 자녀 - 외국 현지 자영업자 - 외국 현지법인 취업자 - 해외파견 교직원 - 해외 선교를 위해 파견된 자 - 외국유학 연수자(재직증명서 제출 必)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에서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새터민)으로 등록된 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본교가 제시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한국국적을 지닌 복수국적자는 재외국민 요건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에 지원해야 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은 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실시하는 '순수외국인 전형'에 지원하기 바림

※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공통화

구 분	2020학년도까지	2021학년도 ~
학생 이수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실행	고교과정 1개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해외 체류기간	대학 자율 설정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구 분	내 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曆年, Calendar year)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의 1개 학년으로 함 -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했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제출서류 (p.16~17 참조)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 여권 사본(부모, 학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가. 해외근무 공무원의 범위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소속기관 내 인사발령 등 정식 해외 파견 근무(상근)의 경우만 해외근무 공무원의 범위로 인정하고, 해외연수(교육) 또는 휴직 후 해외취업 하는 경우는 해외근무 공무원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음

나.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3)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4)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5)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등

※ 국내법인 소속으로서 외국법인과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해당 외국법인으로 파견된 임직원도 인정하나, 현지채용 또는 개인이 투자하여 외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1)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2)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라. 기타 재외국민(선교를 위해 파견된 자)의 인정 범위

국내 관련 기관(교회 또는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자녀로서 아래의 회원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자녀

구 분	회원교단명	홈페이지 주소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http://www.kncc.or.kr
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http://www.cck.or.kr
3	한국교회연합	http://www.ccik.kr
4	한국독립교회연합회	http://kaicam.org

4.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2)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여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학생의 제3국 수학을 인정함(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3)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만을 인정 (유아원, 유치원, 어학 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등은 불인정)
- 4)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검정고시 학력인정 방법을 인정함)
- 5) 외국학교의 교육 연한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인 초·중·고·대학(6-3-3-4) 학제를 기준으로 함 6-3-3 학제가 아닌 학교(13학년제 학교 등)에서 수학한 경우 해당학교의 학제를 확인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학사일정표 제출해야 함
※ 학사일정표에는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방학시작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슈어 등도 제출 가능(홈페이지 출력물 제출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 6)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 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외국학교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2학년제에서 13학년제로 또는 그 반대로 전학하여 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법이나 편법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1개 학년에 한하여 이수한 학년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7) 외국의 1개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가)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나)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인정함
- 8)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 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함	
12학년제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가)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 간의 차이 연수
 나)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학제로 인해 외국 고교 졸업 시에도 우리나라 12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기간이 부족하게 된 지원자가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대학과정 이수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9)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간주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10)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나. 외국근무 인정기준

- 1) 보호자의 외국근무가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외국에 남아서 계속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않음[지원자의 재외국민 인정기간은 보호자(부모)의 외국 근무·거주 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예: 지원자가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1년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외국 근무가 종료되어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 외국 고등학교의 최소 재학 기준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특례입학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2) 외국근무 공무원, 상사직원의 경우, 해외로 파견되어 상근한 경우만 해당되며, 단순 유학, 교육·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거주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외근무 상사주재원의 경우, 해외지사 설치 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근무기간은 외국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보호자의 외국근무 자격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예: 해외근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종료 후 해외 현지법인에 취업할 경우 등)

다. 월반과 조기졸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이수학기(12년 과정, 24개 학기)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라. 외국영주 교포 자녀 중 영주권이 없거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국가는 외국영주 교포 자녀로서의 지원 자격이 없음

마.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1) 단, 외국학교로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학제 차이 등으로 인하여 중복 수학한 것은 1개 학기(6개월) 중복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위와 같은 사유로 누락된 학기는 1개 학기에 한하여 중복 이수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예시)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바. 외국학교 재학 및 해외 체류기간 기준표

재학형태	대 상	구 분	근무 기간	거주(영주) 기간	체류 기간	재학 기간
외국 중·고등학교 과정에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 반드시 포함 ※연속 3년 · 비연속 3년 모두 인정	외국영주 교포 자녀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배우자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자녀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3년 이상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배우자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자녀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3년 이상
	기타 재외국민 자녀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배우자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자녀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3년 이상

- 1) 외국 체류기간은 '출입국 사실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 2) 외국 체류기간은 통산 재학기간이 아닌 1개 학년 단위로 계산함
- 3) 보호자는 부모 중 외국 근무자를 의미함
- 4) 보호자(영주권자의 경우 부모)의 해외 근무·거주(영주)기간 내에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1년 (2개 학기)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5) 해외거주·체류기간은 각 지원자가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재학기간 증명서류(재학증명, 성적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 6) 지원자의 학기 종료일 이전 부모의 근무·거주가 먼저 종료될 경우 해당 학기는 특례 인정 기간에서 제외됨

사.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지원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입사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름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한 서류는 불법이나 편법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지원자격 심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수학기간 인정 / 불인정 사례

1. 인정 사례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 정(중복수학한 1학기 외국학교 수학하기로 인정)
외국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대학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 정(12년 기준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수학 시 인정)
외국학교 (10학년제)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 정(13학년제 학교에서 이수한 9,10학년 -> 8,9학년 이수로 인정)
외국학교 (13학년제)																									
외국학교 (12학년제)																									

2. 불인정 사례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불 인정 (월반 2개 학기 이상으로 23학기 미충족)
외국학교1													
외국학교2							월 반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불 인정 (미이수 학기 2회 이상)
외국학교1													
외국학교2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불 인정 [고등학교 과정 2개 학기(1년) 미만 이수]
외국학교													

5. 전형방법

구 분	전형방법		비 고
재외국민 특별전형	1단계	국어 및 영어 필답고사	1단계 선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배수
	2단계	지원자격 심사	-

가. 모든 지원자는 필답고사를 응시해야 함 [모집인원의 3배수 이하로 지원한 모집단위의 지원자 및 정원 외 대상자(12년 이상 전 교육과정 이수자, 새터민) 포함]

나. 1단계 합격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본교에서 요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다. 전형별 세부사항

구 분	1단계 필답고사	2단계 서류평가[서류접수]
전형대상	지원자 전원	1단계 합격자 (3배수)
고사장발표	2020.8.4.(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
필답고사일	2020.8.6.(목) 10:00	접수기간 : 2020.8.12.(수) ~ 8.14.(금)
전형장소	해당 고사장	추후 공지
출제방식	국어, 영어 객관식	-
고사시간	총 90분	-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제출서류

※ 필답고사 결시자 및 '0'점 취득자, 중도포기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2020.8.4.(화) 공지하는 수험생 안내사항 참조

6. 최종선발 기준

가. 1단계 합격자 : 모집단위별로 동점자가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모두 선발

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하며, 지원자의 수학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

다. 필답고사 결시자(중도포기자 포함), 서류 미제출자, 서류 미비자,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합격자는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함

마.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국어 점수가 높은 자

② 국어 고배점 문항의 득점이 많은 자

③ 영어 고배점 문항의 득점이 많은 자

④ 외국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긴 자

[단, 고배점 다득점자로 동점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

7. 원서접수 및 입학전형 절차 안내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http://admission.ssu.ac.kr로 접속하여 원서 접수 배너를 클릭 또는 ◦ http://www.jinhakapply.com 에 접속하여 송실대학교 검색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보호자 ID로 가입 시 정정 불가)
↓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확인	◦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 관련 동의서 확인
↓	
원서작성 및 사진첨부	◦ 지원하는 전형유형, 모집단위, 개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누락·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반명함판 사진(3×4cm) 사용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지원자의 반명함판 사진(JPG파일)을 업로드
↓	
원서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 확인 (결제가 끝난 뒤 입력사항 수정 절대 불가) ◦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전형료 결제	◦ 결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음
↓	
수험표 출력	◦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
↓	
필답고사	◦ 필답고사 응시(지원자 전체) ◦ 1단계 합격자 발표
↓	
서류제출	◦ 1단계 합격자는 심사서류 방문제출
↓	
서류평가	◦ 서류심사(자격여부)
↓	
최초 합격자 발표	◦ 최초 합격자 등록(등록 예치금 및 잔여등록금 납부)
↓	
총원 합격자 발표	◦ 총원 합격자 등록(등록 예치금 및 잔여등록금 납부)

※ 개인정보 자료 수집 및 활용 동의

- ① 본교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원서접수 하는 것으로서 지원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②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정보는 입시 관련 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본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접수 시 입력한 정보를 입시와 관련된 업무(SMS, ARS업체, 출신 고등학교, 입시 관련 유관기관 등등) 및 본교 교육·연구·행정 대학생활 및 정보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③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연락처(2개 이상), 모집단위(지망학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전화번호) 등

8. 전형료

가. 단계별 전형료(접수 수수료 5,000원 포함)

전형 단계	전형료
전형료 (인터넷 접수 시 전형료 결제)	200,000원

나. 전형료 일부 환불

구 분	환불금액	비 고
1단계 불합격자	100,000원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계좌로 환불처리함 - 서류제출자 중 지원자격 미달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필답고사 결시자		
서류 미제출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원서접수 완료 후(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접수된 원서의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며 본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단,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의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환불할 수 있음 (단, 고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고사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함

나. 원서접수 시 지원자의 연락 가능한 국내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다. 필답고사에 대한 별도의 예비소집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수험생의 고사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해야 함

※ 2020.8.4.(화) 수험생 유의사항 공개 예정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입학전형 평가성적 및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입시성적이 저조하여 수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서류제출 시 모집요강 및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0.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2단계 서류접수는 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시행함

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1)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한국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경우, 별도의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불필요]

2)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됨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협약, 발급기관 및 가입국 안내에 관하여서는 아래의 <참고>를 확인하기 바람

- 다.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 접수 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원본대조 확인해드립니다
- 라. 최종합격 후 등록까지 마친 수험생 중 학력 및 자격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반드시 원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함
- 마. 제출서류는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함
(단,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면 제출가능)
- 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사.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판장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아. 보호자의 자격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예: 보호자가 해외파견 상사직원으로 근무 후 현지 법인에 취업하여 계속 지원자격을 이어갈 경우 두 가지 자격 기준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자.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차. 고등학교 졸업일 기준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는 최종합격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적서류 등)를 졸업일 시점에 맞춰 추가 제출해야하며,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반환함)
- 카.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에 중요한 사항을 위변조,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 파. 합격자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상이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참고>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19.05.14.기준) [문의처: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02-2100-7600)]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11.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명단 (2019년 9월 기준)

국 가 명	학 교 명
일본(4개교)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중학·고등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13개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대만(2개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타이베이한국학교
베트남(2개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2개교)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프놈펜한국학교
계	16개국, 34개교

12. 제출서류(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함)

제출서류 명	외국영주 교포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유치과환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비 고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② 해외학교 학사일정표 (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각 1부)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전입,전출일 명시) 제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외국근무(체류)기간 명시]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1.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 발행 (구청,군청)] 2.국내고등학교 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시,도 교육청발행]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국내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위 증명서 중 1가지 이상 제출] 3.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4.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제출가능자는 모두 제출)	본사 인사권자 발행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수리서)]		● (보호자)				상사직원만 제출 (필수, 미제출시 접수불가)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 (보호자)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 확인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영주권 사본	● (부,모,학생)					해외공관장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기준으로 각각 1부씩 제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영주교포자녀만 해당)]	● (부,모,학생)					
지원자종합기록표<별표1>, 외국학교 조사표<별표2>, 학력조회동의서<별표3>	●	●	●	●		본교 소정양식
재직사실조회동의서<별표4>		●				본교 소정양식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별표5>	●	●	●	●		본교 소정양식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서류는 각 1부씩 제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 외국학교 학사일정 또는 학제 관련 서류에는 해당 외국 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홈페이지 출력물(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브로슈어 등 가능]
- ※ 상사직원의 경우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에 소속부서, 직위, 파견국가명, 파견기간이 함께 명시되어야 함
- ※ 정부의 초청 및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는 정부기관 초청 또는 추천서를 첨부
- ※ 지원자 종합기록표<별표1>, 외국학교 조사표<별표2>,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별표3>,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별표4>는 본교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 ※ 부모의 이혼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 ※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별표5>은 최종 합격 후 등록자에 한하여 제출(부,모,학생)

제출서류 명	기타 재외국민				비 고
	외국유학 연수자의 자녀	선교파견 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취업자 자녀	자영업자 자녀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성적증명서 / ② 해외학교 학사일정표 (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각 1부)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전입, 전출일 명시) 제출
소속 기관장 추천서	● (보호자)				
①소속 당회장 추천서 ②선교파견사실확인서(파견기간 명시必) ③선교사 파송기관 법인등록증 ④회원교단 소속증명서 (각 1부)		● (보호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독립교회연합회 회원교단에 한함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외국근무(체류)기간 명시]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본사 인사권자 발행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보호자)	● (보호자)	
지원자격 기간의 보호자 세금납입 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입증명]			● (보호자)	● (보호자)	필수서류이며 미제출 시 접수 불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 확인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여권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기준으로 각각 1부씩 제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주민등록등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부,모,학생 모두가 한 세대 안에 있는 경우 1부만 제출
지원자종합기록표<별표1> 외국학교 조사표<별표2> 학력조회동의서<별표3>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별표5>	●	●	●	●	본교 소정양식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서류는 각 1부씩 제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 외국학교 학사일정 또는 학제 관련 서류에는 해당 외국 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홈페이지 출력물(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브로슈어 등 가능]
- ※ 세금납부 증빙서류에는 해당자 성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세금납부 사실 증빙 서류가 없거나 면세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지원자 종합기록표<별표1>, 외국학교 조사표<별표2>,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별표3>는 본교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 ※ 부모의 이혼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 ※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별표5>은 최종 합격 후 등록자에 한하여 제출(부,모,학생)

■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1.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p.15 재외 한국학교 발급서류 제외]
2.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됨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음)

■ 지원자 종합기록표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자 종합기록표 작성은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조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바른 글씨로 기재하여야 하며,
원서상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1. 수험번호, 모집단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2.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호적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
3. 자격구분 : 지원자의 해당란에 ✓표로 표기
4. 지원학생 기재란
가. 학교명 : 초등학교부터 최종 재학한 학교까지 순서대로 기재
나. 재학기간 : 재학한 학교의 재학기간 및 재학연수 기재
다. 학교소재지 : 재학한 학교의 국가명 및 도시명 기재
라. 국내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 재학한 학교 과정을 “—” 로 표기
마. 총 재학기간 : 총 재학한 기간을 기재
바. 외국학교 재학기간 : 총 재학한 기간 중 외국학교 재학기간만 기재
사. 국내학교 재학기간 : 총 재학한 기간 중 국내학교 재학기간만 기재
아. 교포학생 기재란 : 지원자가 교포일 경우에만 기재
5. 부모 기재란 (12년 전 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작성 불필요)
가. 부, 모 성명은 호적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
나. 외국거주기간 : 외국에 거주한 기간 및 거주 년 수 기재
다. 소재지 : 거주한 외국의 국가명 및 도시명 기재
라. 학생의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 부모가 외국에 거주할 당시 학생이 재학한 외국학교 과정을
“—” 로 표기
마. 교포 : 부모가 교포일 경우에만 기재
6. 최종귀국일 : 출입국사실증명서상에 기록된 학생, 부, 모의 최종 귀국일을 기재

지원자 종합기록표(예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국적	영주권 취득일 (교포학생)	시민권 취득일 (외국인학생)
		김송실					
자격구분 선 택	☐ 영주교포 자녀 ☐ 공무원 자녀 ☒ 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 외국유학 연수자의 자녀 ☐ 선교파견 요원 자녀 ☐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자영업자 자녀 ☐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외국인, 결혼이주민)						

■ 지원자 기재란 (재학한 학년 및 학기를 줄긋기(—)로 표시하세요)

학교명	재학기간		소재지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OO초등학교	2009. 3. 2. ~ 2015. 2. 18.	6년 개월	한국	서울																		
OO중학교	2015. 3. 2. ~ 2017. 2. 14.	3년 개월	한국	서울																		
OO한국국제학교	2017. 3. 2. ~ 2020. 2. 20.	2년 개월	중국	베이징																		
OO고등학교	2020. 3. 2. ~ 2021. 2. .	1년 개월	한국	서울																		
	. . .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12 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2 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10 년 개월					

■ 부모 기재란 (학생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전 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기재할 필요 없음)

학교명	외국거주기간		소재지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김대학)	2017. 2. 14. ~ 2020. 2. 28.	년 개월	중국	베이징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교포	영주국() 영주권번호()			외국인	국적 () 시민권번호 () 시민권취득일 (년 월 일)																										
모(母) 성명 (이정보)	2017. 2. 14. ~ 2020. 2. 28.	년 개월	중국	베이징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교포	영주국() 영주권번호()			외국인	국적 () 시민권번호 () 시민권취득일 (년 월 일)																										

■ 최종 귀국일 기재란

학 생	2020 년 2 월 28 일	부	2020 년 2 월 28 일	모	2020 년 2 월 28 일
-----	-----------------	---	-----------------	---	-----------------

2020 년 월 일

지원자 : (성명) @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국적	영주권 취득일 (교포학생)	시민권 취득일 (외국인학생)
자 격 구 분 선 택	☐ 영주교포 자녀 ☐ 공무원 자녀 ☐ 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 외국유학 연수자의 자녀 ☐ 선교파견 요원 자녀 ☐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자영업자 자녀 ☐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외국인, 결혼이주민)						

학교명	재학기간		소재지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 ~ . . .	년 개월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성명	외국거주기간		소재지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교포	영주국() 영주권번호()			외국인	국적 () 시민권번호 () 시민권취득일 (년 월 일)																											
모(母) 성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교포	영주국() 영주권번호()			외국인	국적 () 시민권번호 () 시민권취득일 (년 월 일)																											

[illegible]

외국학교 조사표

■ 외국학교 관련 필수 기재사항

학교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홈페이지 URL
	(학제) - -				
	(학제) - -				
	(학제) - -				
	(학제) - -				
	(학제) - -				

- 1) 학교는 외국 소재 초·중·고교만 기재하고, 해당 학교의 공식명칭을 기입해야 합니다.
- 2) 팩스번호와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 한국 82-2-820-0023
- 3) 학제는 외국학교 초, 중, 고 학제를 기입해야 합니다. 예) 한국의 경우 6(초)-3(중)-3(고)

20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SOONGSIL UNIVERSITY

Sangdo-ro 369, Dongjak-gu, Seoul. 06978, Korea(*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

Tel : +82-2-820-0023

Fax : +82-2-820-0022

e-mail : jmsim@ssu.ac.kr

Date : * **제출일자** _____

School Name : (영문)* _____

School Address : (영문)* _____

School Phone : * _____, Fax : * _____, E-mail : * _____

Subject : Transfer Student Information

To whom it may concern :

We are pleased to have the following individual, (*학생이름 _____), transferred from your school, studying here at Soongsil University. Your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ppreciated and will be held confidentially. For your reference, the student's Letter of Agreement is below.

If possible, a response from your office by fax will greatly help to expedite our processing of this individual's application. Thank you fo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Kee-Chul Jung, Ph.D.
Dean of Admissions
Soongsil University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Soongsil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1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Soongsil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Written by applicant (지원자가 기록)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해외 학교 담당자가 기록)
Date of birth: * _____	☐ Correct ☐ Incorrect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_____	☐ Correct ☐ Incorrect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 _____	☐ Correct ☐ Incorrect
Name and Signature * _____ Date * 제출일자 _____	Additional comments : _____ Printed Name and Signature : _____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

(해외상사직원)

본교수험번호 :

수험생 성명 :

회사명	해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회사명과 동일하게 기재
회사주소 및 연락처 (한국 본사 인사팀)	

재직자 명		재직자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휴대폰번호)	
E-mail			
재직기간	자격인정기간		

재직사실 동의

1. 본인은 이 동의서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나 대리 작성이 아닌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송실대학교가 본인의 재직사실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귀교가 이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2020년 월 일

재 직 자 성 명 : _____(서명)

송실대학교 총장 귀하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증명종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위임하는 사람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용도	대학 입학	제출처	송실대학교 입학처
----	-------	-----	-----------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송실대학교 입학처)	성명	송실대학교 입학처 재외국민전형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69 송실대학교 신양관 1층 입학처 02-820-0023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의 발급신청(조회)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유의사항>

1.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본인 및 부모 모두 제출함).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대표전화 02-820-0114)】

안내 및 문의	안내부서	전화번호	건물위치
입학관련 안내	입학처 입학관리팀	02-820-0050~4	신양관 1층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입학처 입학사정센터	02-820-0011~2	
휴·복학 등 학적 안내	교무처 학사팀	02-820-0152	
수강신청 안내		02-828-7402	
전과 안내		02-828-7403	
부전공 안내			
복수전공 안내			
교직이수 안내	교무처 교직팀	02-828-7404~5	
등록 및 등록금 안내	총무처 재무·회계팀	02-820-0184	
병사관련 안내	총무처 예비군연대	02-820-0180	미래관 1층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안내	학생처 장학팀	02-820-0167	학생회관 5층
ID카드(학생증) 발급 및 민원안내	학생처 학생서비스팀	02-820-0068~9	
생활관(기숙사) 입사 안내	제2생활관(Residence Hall)	02-2621-0100, 0200,0300,0400	레지던스홀 1층
장애학생 지원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	02-820-0060	조만식기념관 1층
대학 및 학과안내	인문대학 사무실	02-820-0303	-
	자연과학대학 사무실	02-820-0403	
	법과대학 사무실	02-820-0463	
	사회과학대학 사무실	02-820-0492	
	공과대학 사무실	02-820-0603	
	IT대학 사무실	02-820-0932	

※ 부서 위치는 부서이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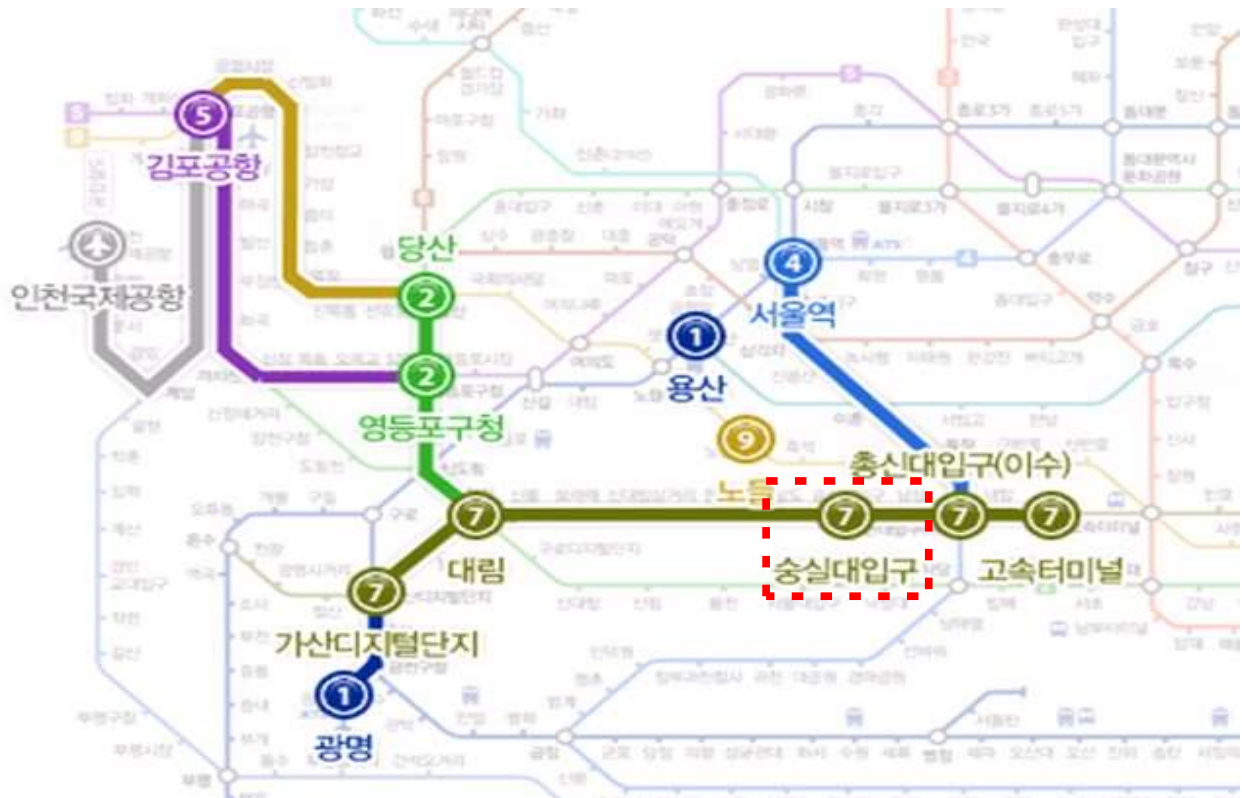
※ 본교 모집단위별 안내 : http://www.ssu.ac.kr/web/kor/edu_a 참조

【교내 건물 배치도】



- ① 베어드홀 (Baird Hall)
 - ② 송덕경상관 (SoongDuck Economics & Business Building)
 - ③ 문화관 (Cultural Center)
 - ④ 안익태기념관 (Ahn Eaktai Memorial Hall)
 - ⑤ 형남공학관 (Hyungnam Memorial Engineering Building)
 - ⑥ 교육관 (Education Building)
 - ⑦ 백마관 (White Horse Building)
 - ⑧ 한경직기념관 (Rev. Han Kyungchik Memorial Hall)
 - ⑨ 신양관 (Shinyang Hall)
 - ⑩ 벤처중소기업센터 (Venture & Small Business Center)
 - ⑪ 진리관 (Veritas Hall)
 - ⑫ 조만식기념관 (Jo Mansik Memorial Hall)
 - ⑬ 한국기독교박물관 (The Korean Christian Museum)
 - ⑭ 중앙도서관 (Central Library)
 - ⑮ 연구관 (Faculty Research Building)
 - ⑯ 창신관 (Innovation Hall)
 - ⑰ Global Brain Hall
 - ⑱ Residence Hall
 - ⑲ 전산관 (Computer Science Institute)
 - ⑳ 미래관 (Vision Hall)
 - ㉑ 정보과학관 (Information Science Building)
 - ㉒ 웨스트민스터홀 (Westminster Hall)
 - ㉓ 학생회관 (Student Union)
 - ㉔ 창익관 (Genesis Hall)
 - ㉕ 대운동장 (Main Stadium)
- A 정문 (Front Gate)
B 중문 (Middle Gate/Main Parking Entrance)
C 남문 (South Gate/Parking Entrance)
D 북문 (North Gate)
E 조만식기념관 지하주차장진입로 (Parking Entrance)

【교통편(지하철)]지하철 7호선 송실대입구역 ③번 출구



【송실대학교 정문 전경】

숭실대학교 입학처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전화 (02)820-0050~4(입학안내)

팩스 (02)820-0022

<http://admission.ssu.ac.kr>

